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86
----------	-------

발의연월일 : 2025. 11. 4.

발 의 자 : 박주민 · 김 윤 · 이재정
임미애 · 박용갑 · 황명선
윤종균 · 민병덕 · 장경태
김용민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퇴폐적인 내용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그런데 인종·성·국적·신체·나이·학력·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장 등이 금지된 광고물에 대하여 조치할 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물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금지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장등이 이러한 내용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을 “인종·성·국적·신체·나이·학력·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으로, “있는”을 “있거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를 “신속하게 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을 “운영 및 제1항제3호에 대한 기준”으로 한다.

3. 광고물이 제5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법률 제21018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등은 광고물의 내용이 제5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5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표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물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표시한 광고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생 략)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 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u>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u>있는 것</u>	5. <u>인종 · 성 · 국적 · 신체 · 나이</u> <u>· 학력 · 종교 · 사상 등을 이</u> <u>유로 한 차별적-----</u> <u>있거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u> <u>는-----</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 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 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u> <u>의하기</u> 위하여 시 · 도(특별자 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 · 군 · 자치구에 각각 옥외광 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 ----- ----- <u>신</u> <u>속하게 심의하기-----</u> ----- ----- ----- -----.

1. ·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② (생략) ③ 심의위원회의 <u>운영</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018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⑥ (생략) <u><신설></u> ⑦ ~ ⑪ (생략) 제20조(과태료) <u><신설></u> ① ~ ③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광고물이 제5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운영 및 제1항제3호에 대한 기준</u>----- -----. 법률 제21018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시장등은 광고물의 내용이 제5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u> ⑧ ~ ⑫ (현행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제20조(과태료) ① <u>제5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를 표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
---	--

항까지와 같음)
